#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3-003-014호

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3. 2. 22.

# 주 문

- 1. 피심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 한다.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는「개인정보 보호법」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배달대행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며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기준으로

####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건)
	· · · · · · · · · · · · · · · · · · ·		

####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계약이 종료된 배달종사자의 개인정보( )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비밀번호를 서버로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관 리자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26조는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와 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이 와 계약이 종료한 배달종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1) (개인정보 암호화) 피심인이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개인 정보처리자의 비밀번호를 서버로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 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2) (접속기록 보관) 피심인이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미파기	보호법 §21①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호법 §29	§30① 제3호, 제4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고시§7①) ・접속기록의 보관을 소홀히 한 행위(고시§8①)		

### Ⅳ. 처분 및 결정

#### 1. 시정조치 명령

- 가.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	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군인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대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3년 2월 22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